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63 발의연월일: 2024. 10. 11.

발 의 자: 박주민·강선우·강훈식

김예지 · 김재원 · 남인순

김한규 • 이수진 • 전진숙

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에 이어 2023년에도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여전히 친가·외가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경조사를 위한 휴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기업 자체 내규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친가와 외가에 차별이 발생해도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 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 조의6, 제37조제2항제8호의2 및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에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6(경조사 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가(이하 "경조사 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1.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 2. 자녀 입양
 - 3. 4촌 이내의 친족의 사망
 -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휴가의 경우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부계 또는 모계혈족임을 이유로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주는 경조사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경조사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 ⑤ 경조사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경조사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 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 우

제3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경조사 휴가의 신청을 받고 경조사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그가 부계 또는 모계혈족임을 이유로 휴가기간을 다르게 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2조의6(경조사 휴가) ① 사업
	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가(이
	하 "경조사 휴가"라 한다)를 신
	<u>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u>한다.</u>
	1.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u>2. 자녀 입양</u>
	3. 4촌 이내의 친족의 사망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휴가의 경우 사망한 사
	람의 성별이나 부계 또는 모
	계혈족임을 이유로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경조사 휴가를 이
	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
	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u>된다.</u>
	④ 경조사 휴가 기간은 근속기
	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
	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

제37조(벌칙) ① (생 략)

-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8. (생 략) <u><신 설></u>

- 9. (생략)
- ③・④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8. (생 략) <신 설>

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요	위한다.	

⑤ 경조사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 8의2.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하 여 경조사 휴가를 이유로 해 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9.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0	/리피크 코 O \

1. ~ 8. (현행과 같음)8의2.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

여 경조사 휴가의 신청을 받 고 경조사 휴가를 주지 아니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 하여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그가 부계 또는 모계혈족임을 이유로 휴가기간을 다르게 한 경우

- 9. (생략)
- ④·⑤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